

1962年 第三次 定例理事會會議錄

日時 1962年4月14日 午後4時
 場所 圖協事務局
 出席 閔泳珪 崔台鎬 張仁植 張一世 朴
 (無順) 熙永 白麟 李喆珪 金鍾洙 委任理
 事 3名

- 案件
1. 事務局報告.
 2. 今年度 事業月別進行豫定計劃承認 및 新規事業案檢討에 關하여
 3. 圖書館法에 關하여
 4. 事務局長認準에 關한件
 5. 事務局處務規定案承認에 關한件
 6. 其他

開會 4時20分. 閔會長司會

案件第1號 協會事務局經過報告(李鍾文局長이 報告).

- ㄱ. 昨年부터 仁川稅關에 留置되었던 國際交換圖書 38箱子를 지난 4月11日 찾아다 現在 分配中임.
- ㄴ. 지난 4月9日午後「圖協月報」編輯委員會를 召集하여 昨年6月以後 中斷되었던 機關紙를 이번에 3,4月合併號로 續刊토록 決定하였음.
- ㄷ. 國庫補助金 8百萬圓中 百貳拾萬圓이 削減되었다는 消息 듣고 詳細한 것을 알어보려 하였으나 實務者(文教部)가 不在中(教育中) 決定的인 것인가에 對해서는 數日內로 確認할것임.
- ㄹ. 會費徵收現況, 아직 23%밖에 納入되지 않고 있다.

張一世: 經過報告中 지난번 理事會會議錄朗讀의 要請이 있었으나 그동안 事務局

의 人事變更으로 아직 未備한 點을 閔會長이 解明하고 다음 會議때로 미루기로 合議함.

案件第2號

李鍾文: 協會新年度 事業計劃書와 新年度 歲出豫算書와 若干의 項目差異가 있음. 그래서 어찌까지나 歲出豫算書에 따라 事業을 效果的인 것부터 먼저 重點的으로 했으면 하고 大略의 月別進行豫定計劃書를 作成했으나 요지음 圖書館法關係로 奔走하여 좀더 具體的이고 效率性 있는 豫算에 비추어서 計劃書를 만들어 郵送하여 드리기로 하겠음.

案件第3號 李鍾文事務局長이 그동안 圖書館法案이 法制室에서 文教部로 뒤 돌아온 理由를 簡略히 說明하고, 文教部와 協會가 合席하여 다시 建設的인 方向으로 하자고 約束받음. 그동안 國立圖書館 崔館長任이 文教部와 協會가 連席會議를 가져서 建設的인 案을 만들자고 約束받는데 많은 努力이 있었음을 말한바 이에 對하여 會長이 圖書館協會를 代表하여 崔台鎬氏께 謝意를 表함.

李鍾文: 連席會議를 어제(4月13日) 가질 豫定이었으나 사정에 依하여 來週初로 미룸.

崔台鎬: 協會의 總體的인 意見을 이 자리에서 決定하였으면 좋겠다.

張仁植: 從來의 案中에 우리들이 가장 重要하다고 느끼는 問題만 強調하면 어떻게는가?

李鍾文: Mr. Croslin(피바더)이 協會案과

文教部案을 檢討分析하여 새로운 草案을 作成하여 文教部와 法制處에 提出하였는데 그 內容은 建設的이고도 有益한 것으로 思料된다. 두 案의 缺點을 指摘하여 새로운 案을 만들어 項目마다 說明을 붙였음(例로서 學點問題를 들)이 크로스인案의 번역物이 入手되는데로 理事들에게 一部씩 붙여드리겠음. 文教部에서도 이 案을 參考할것 같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協會의 意見을 決定한다는 것도 一方的으로 決定하기는 難處하다고 생각한다.

崔台鎬 : 文教部에서 國立圖書館法을 따로 定한다는 것에 對하며 생각하여 볼 問題다. 또 特殊圖書館問題도 文教部에서는 法을 定할 必要性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學校圖書館까지 特殊圖書館으로 보고 있다.

朴熙永 : 協會案도 私立大學·國立大學圖書館 司書資格等を 公共圖書館 司書資格에 準하여 함께 묶는데 對해 애당초 부터 無理가 좀 있었다. 日本같은 나라는 圖書館關係法이 4, 5種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李鍾文 : 日本圖書館法은 英美法系에 따르고 있다. 大韓民國은 大陸法系에 따라 簡略하게 하자는 것이 政府의 見解이다.

崔台鎬 : 文教部는 公共圖書館에서 協會案대로 한다고 하면 司書不足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司書敎師는 教育法에서 다루어야 할 問題라고 主張한다고함. 여러 가지 異議가 많아서 難處하다.

李珪珪 : 現在 國際交換業務를 最高會議圖書館에서도 하고 다른 政府機關에서도 하고 二重三重으로 하고 있으며 國內圖書館과의 聯關도 한군데 集中해서 할수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卽, 現國立圖書館과 最高會議圖書館과 같이 行政府나 立法府에 隸屬된것이 아니고 獨立된 中央圖書

館을 此際에 法으로서 만들었으면 可리라 생각한다.

李鍾文 : 日本이나 美國은 다 그러하고 그렇게 하는것이 原則적이다. 그러나 在 形便으로 本法을 文教部에서 다루 限에 있어서는 不可能한 일이라고 본
金鍾洙(全南大) : 李珪珪氏의 案은 性根 政府의 組織機構부터 바꾸어야 할 槓의 것이다.

張一世 : 當面한 問題로 文教部와 合席히 會議를 갖는데 協會側에서 代表를 1, 2 選出하여 會議에 臨해야 되지 않겠는가
閔會長 : 李鳳順氏와 朴熙永氏 두 理事 選定함이 어떤가 하고 말한바 滿場一로 可決됨.

閔會長 : 案件第4號를 提議(事務局長認거 本人退場 履歷書朗讀

전번 理事會에서 事務局長任命을 會이 委任을 받았으나 여러 理事任들에 認准을 再請한바 滿場一致로 李鍾文을 贊成함.

案件第5號는 規程集제로하기로 可決함.

案件第6號 其他事項

李鍾文 : 圖書館建築 및 用品 委員會를 經營하는 代表者名을 I.F.L.A. 用品 委員會에서 알기 願한다는 要旨의 書信이 있음을 報告.

朴熙永 : 現在 本協會에서 此分野活動이 別無하니 갑자기 누구를 指名하기는 難處하고 事務局長名으로 하도록 함을 可決함.

張仁植 : 前任 事務局長의 退職名問題를 이 자리에서 決定지워야 할것이라고 말한바

朴熙永 : 圖協處務規程에 例示되어 있을터이니 그대로 施行함이 어떤가

閔會長 : 圖協處務規程대로 하되 早速한 時日內로 常務理事會를 召集하여 處理키로 可決함. (閉會)